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2. 3. 1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심사보고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- 문화재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조정함(안 제4조)
- 종전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함(안 제9조제2항)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안 제4조 음성나환자집단촌에도 부천에서 지원됩니까?	○ 없습니다.
○ 안 제9조제2항 지정문화재가 부천에 있습니까?	○ 등록 문화재가 없습니다.
○ 안 제12조제1항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에 해당되는지?	○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64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문화재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조정함(안 제4조)
- 종전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함(안 제9조제2항)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”를 “의하여 시세의”로 하고 “지역사회의”를 “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”로 한다.

제4조 중 제목 “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”을 “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”을 “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”으로 하고 “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”을 “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”으로 한다.

합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및 ③(생략)

.....

② 및 ③(현행과 같음)